#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9

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이양수·김은혜·정희용

안병길 · 주철현 · 정운천

추경호 • 권성동 • 이개호

권영세 · 이만희 · 김태호

김성원 · 서삼석 · 조수진

이헌승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'위험해역'및 '위험예비해역'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,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,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,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.

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'위험해역'으로

일원화하고,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'고위험해역'으로 지정하는 한편,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아울러,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(適時)에 반영할 수 있도록,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 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 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한편,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, 해적대응 비상교육훈 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· 점검 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또한, 적격성(適格性)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·내외 업 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,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.

아울러,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· 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·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 한 관리·감독이 어려워,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위험해역 정의 및 설정 근거규정을 변경함(안 제2조제7호·제8호, 제8조).
- 나.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- 다.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규정을 개정함(안 제12조, 제12조의2 신설).
- 라.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 영업승인 요건을 개정함(안 제24조).

##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"발생하여"를 "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"으로, "해양수산부령으로"를 "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"고위험해역"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위험해역 또는 위험예비해역(이하 "위험해역등"이라 한다)을"을 "위험해역을"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"위험해역등의"를 "위험해역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위험해역등을"을 "위험해역을"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위험해역, 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험해역등에서"를 "위험해역에서" 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선원등(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고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수 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.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, 적용 대상,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국제항해선박등,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등에게 「선박직원법」 제9조에따른 면허취소,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중 "위험해역등에의"를 "위험해역에의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

한다.

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, 시설기준,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출입·점검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항해선박 소유자, 대행기관 및 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라 선박 등을 검사하는 선박검사관이나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국제선박 등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자, 점검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 제항해선박 소유자, 대행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이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출입·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 등을 점검한 결과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중 "위험해역등을"을 "위험해역을"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전단 중 "제1항에"를 "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"로, "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"를 "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"로 하고, 같은 항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"를 "제1항에"로, "신고 또는 변경신고를"을 "승인을"로, "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"를 "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,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"를 "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"로, "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

한다"를 "제26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2조, 제33조,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차 및 승인기간,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제1호 중 "제12조제2항"을 "제11조의2제1항·제2항, 제12조제2항"으로, "위험해역등에"를 "위험해역 또는 고위험해역에"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3호 중 "제12조제3항에"를 "제12조의2제1항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12조제6항에"를 "제12조의2제4항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 략) 7. "위험해역"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(이하 "해적행위 등"이라 한다)가 발생하여 국 ------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-----제항해선박·원양어선·해상구 조물(이하 "국제항해선박등" 이라 한다) 또는 선원·승선자 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 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 을 말한다.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 산부 장관이 고시로-----8. "위험예비해역"이란 해적행 8. "고위험해역"이란 위험해역 위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선원·승 선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수 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한다. 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. 9. • 10. (생략) 9. • 10. (현행과 같음)

제	4조(건	적용범	위)	$\circ ]$	법은	<u>위</u>	험	해
	역	또는	위	험이	ᅨ비하	<u> </u> 역(	0]	하
	"위험	해역등	등"이	라	한다)	을	통	항
	하는	국제	항해	선빅	능에	대	하	여
	적용	한다.	다민	., T	1음	각	호.	의
	어느	하나	에 ㅎ	내당:	하는	선별	<u>}</u>	및
	해상구	구조물	에	대히	여는	コ	러	하
	지 아	-니하다	<b>구</b> .					

#### 1. ~ 3. (생략)

- 제7조(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) ① 저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에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피해예방요령(이하 "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<u>위험해역등의</u> 진출입 시 조 치할 사항
  - 2. 3. (생략)
  - ② <u>위험해역등을</u>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 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 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지켜야 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<u>위험해</u>	_
<u>역을</u>	
	-
	_
•	
,	
1. ~ 3. (현행과 같음)	
제7조(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) ①	)
1. 위험해역의	-
2.·3. (현행과 같음)	
② 위험해역을	_
<u> </u>	
	•

- ③ (생 략)
- 제8조(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)
  -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 적행위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에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 다.
    - 1. 2. (생략)
    - 3.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 방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제11조(국가의 조치)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<u>위험해역등에서</u> 해적 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② ③ (생 략)

<신 설>

제8조(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)
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위험해역, 고위험해역 지정
및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
방에 필요한 사항
제11조(국가의 조치) ①
위험해역에서
<u>기업에 기에서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고위험해역 진입제한
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

③ (혀해과 간은)

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 해선박등 또는 선원등(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고위험해 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.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 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 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에 그 선 박소유자등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 키도록 명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, 적용 대상,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 한 국제항해선박등, 선박소유자 등 및 선원등에게 「선박직원 법」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,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선원대피처의 설치 등) ① 제12조(선원대피처의 설치 등) ①

(생 략)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 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 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 선박등에 대하여는 <u>위험해역등</u> <u>에의</u>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라 선박 등을 검사하는 선박검사관이나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선박등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원대피처의 설치 여부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선박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「국제항 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계 국가 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

(선생각 실금)
②
위험해역에의
③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
박, 시설기준, 비치물품 및 그
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
부령으로 정한다.

(처체코 가 이 )

<삭 제>

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출입·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선원대피 처가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⑦ 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 | <삭 제> 박, 시설기준,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제12조의2(출입·점검 등)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 의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제항해선박 소유자, 대행기관 및 교육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「선박안전법」 제76조에 따라

선박 등을 검사하는 선박검사 관이나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 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 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접 해당 국제선박 등 또는 사 업장에 출입하여 해적행위 피 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 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 검 7일전까지 점검자, 점검 일 시·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국제항해선박 소유 자, 대행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선 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 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목적달성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출입·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5조(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) ① 선박소유자등은 <u>위험해</u> 역등을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 박등과 선원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 따른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 경비원(이하 "해상특수경비원" 이라 한다)을 승선하게 할 수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 등을 점검한 결 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제선박 등에 대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되거나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 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국가보안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 다. 제15조(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) ① -----위험해

있다.

- ② ~ ⑤ (생 략) 영업 승인) ① • ② (생 략)
  -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 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|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  - 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,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2조, 제33조, 제 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  - ⑥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 차 및 승인기간, 제3항에 따른 신고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| 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4조(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제24조(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
  - 영업 승인) ① · ② (현행과 같 유)
 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------<u>하기</u> 전에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에 대한 적격성심사를 하여야-----. <후단 삭제>
  - ④ 제1항에-----승인을-----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내 에 지사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----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.
  - ⑥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는 제22조--제26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2조, 제33조, 제3

#### <신 설>

- 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에 따른 제한조치를 위반하 여 <u>위험해역등에</u> 진입한 국 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등 및 선원등
  - 2. ~ 7. (생략)
- 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제12조제3</u> <u>항에</u> 따른 출입·점검을 거부· 기피·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  - 4. <u>제12조제6항에</u> 따른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

⑦ 제1항에 따른 영업 승인절						
차 및 승인기간, 제3항에 따른						
신고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						
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						
제44조(벌칙)						
1. <u>제11조의2제1항ㆍ제2항, 제1</u>						
-위험해역 또는 고위험해역에						
2. ~ 7. (현행과 같음)						
2. ~ 7. (현행과 같음)						
2. ~ 7. (현행과 같음) 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 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제47조(과태료) ①						

니한 자	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